

공공 후견청 연락처

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Public Guardian and Trustee
700-808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 V6C 3L3

전화 **604 660 4444**
이메일 **estates@trustee.bc.ca**
웹사이트 **www.trustee.bc.ca**

무료 전화는 서비스 BC(Service BC)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아래) 번호로
전화하신 후 공공 후견청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정규 근무 시간: 월~금 8:30am~4:30pm).

밴쿠버 **604 660 2421**
빅토리아 **250 387 6121**
BC 주 내 기타 지역 **800 663 7867**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유언장 만들기

유언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BC 주에서 만 16세 이상인 사람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때로 사망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 유언자가 유언 집행자(executor)로 지명하는 사람이 즉각 행동에 나서 장례 준비와 유산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 유언자의 소유물을 보호하고 유언자가 지시한 대로 처리되게 합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외 부양가족, 반려동물을 적절히 배려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 유언자의 의향이 무엇이며 그 의향을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가족과 친구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 유산 관리 관련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게 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복잡하지 않아도 되고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와 법률 공증사가 유언장 작성을 돕는데, 법률 공증사가 만들 수 있는 유언장의 종류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자력 유언장 작성 키트도 있지만, 유언장에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 지정 등 유언자의 의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려면 여전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전문적인 조언에 비용을 들이는 만큼 그만큼 가치를 하는 영역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한 명도 생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장에 자녀의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지명된 보호자가 이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BC 주에서 유효한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며, 작성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끝부분에 서명하고 증인도 서명하여야 합니다. 유언장과 유언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언장 유산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이 이미 있는 경우

유언장이 이미 있다면 몇 년마다 검토하여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 환경이 바뀌었거나 유언 집행자가 이사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유산을 더는 관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면 변호사나 법률 공증사를 만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집행자 선정하기

유언 집행자 선정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우자나 성인 자녀, 부모, 보호자, 신뢰하는 친구를 선정합니다. 변호사나 신탁 회사 같은 전문가를 선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공 후견청(PGT)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로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맡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만들면 유언 집행자에게 유언장과 기타 중요 서류를 보관한 곳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어떤 종류의 장례를 원하는지도 유언 집행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계도를 만들고 수혜자들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끝으로, 법률 공증사나 변호사가 유언장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인구 통계국(Vital Statistics Agency)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기관은 유언장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작성일과 보관 장소만 기록해 둡니다. 이로써 유언장 작성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PGT가 제공하는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EPTS)에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trustee.bc.ca.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Fees charged by the PGT”(PGT가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제목으로 제공됩니다.

PGT를 유언 집행자로 지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상의할 분은 604.660.4444로 연락하여 EPTS의 품질 보증 매니저(Quality Assurance Manager)와 통화하거나 estates@trustee.bc.ca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공공 후견청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 후견청은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